

제2022-033호



북경

중국 최고인민법원, “워터마크’만을 근거로 한 저작권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북경사무소

현황

-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1심과 2심을 거친 후 재심까지 간 사진저작권 침해 사건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유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임

중국의 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최하위 법원인 기층법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2심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함. 따라서 대대수의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 다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1심을 중급인민법원 (또는 지식재산권법원) 이 관할함

기층인민법원에 해당하는 인터넷법원이 설치된 베이징, 항저우, 광저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터넷법원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건을 집중 관할함. 또한 중급인민법원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법원이 설치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권법원이 저작권 침해 사건의 2심 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건의 1심을 집중관할 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권리귀속이 문제된 이번 사안에서 “오직 워터마크에 근거하여 사진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1심과 2심에서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취소함

아래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주요내용

- 허난차오루회사(河南草庐公司, 이하 '차오루회사')는 자사의 위챗 공중계정에서 4장의 사진을 사용함. 얼마 후 시각중국(视觉中国)을 운영하는 한화이메이회사(汉华易美公司)가 이 4장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문제된 사진에 시각중국 및 gettyimages라고 표기된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저작권은 시각중국에 속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함
- 한화이메이회사는 사진저작물의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텐진시제3중급인민법원(天津市第三中级人民法院)에 소를 제기하면서 40,000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진 한 장당 2,000위안으로 계산하여 총 8,000위안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됨. 이에 불복한 차오루회사는 텐진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함. 하지만 상소심 법원인 텐진시고급인민법원(天津市高级人民法院)은 차오루회사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림. 이에 차오루회사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함
- 이번 재심에서의 쟁점은 피신청인 한화이메이사가 문제된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는지 여부임.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번 사안에서 한화이메이사는 문제된 4장의 사진 모두 Getty회사의 수권에 근거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주장함. 또한 한화이메이사는 Getty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된 사진의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밝힘. 따라서 한화이메이사가 문제된 4장의 사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로서 Getty회사가 관련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2010년 저작권법 제11조는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며,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국민이 저작자이다.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주관했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지를 대표해서 창작했고,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책임을 지는 저작물의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저작자로 본다. 상반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저작물에 서명한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민사사건사법해석(著作权民事案件司法解释) 제7조는 “당사자가 제공한 저작권과 관계된 초고, 원본, 합법적 출판물, 저작권등록증서, 인증기구가 발급한 증명, 권리취득과

관계된 계약은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저작물 또는 제품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권리자로 보며,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음

문제된 사진 저작물에는 ‘gettyimages®’라는 워터마크 이외에 ‘DougalWaters’, ‘PaulBradbury’, ‘ImageSource’, ‘sdominick’이라고 표기된 워터마크가 존재하며, 또한 ‘gettyimages’ 바로 옆에 등록상표표지인 ®이 표기되어 있음. 따라서 여기에 표기된 워터마크만을 근거로 문제된 사진의 저작권이 Getty회사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한화이메이사는 1심과 2심 소송에서 Getty회사의 ‘수권확인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권리성명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수권확인서’는 Getty회사가 한화이메이회사에게 수권한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Getty회사가 문제된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음. 또한 권리성명은 단순한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증거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저작권 귀속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음

피신청인 한화이메이사는 답변의견 및 법정에서의 질의에서 문제된 사진 1과 사진 4는 실제 사진 촬영자와 Getty회사 간 사진제공계약을 통해서 제공되었으며, Getty회사는 대리인으로서, Getty회사의 명의로 전시 및 판매하고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문제된 사진2와 사진3의 경우 Getty회사가 OJO회사를 인수한 후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밝힘. 하지만 설사 한화이메이회사의 상술한 진술내용이 모두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대리관계의 성질상 대리인과 피대리인 간에는 민사권리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사진촬영자 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이메이회사가 Getty회사로 부터 문제된 사진1과 사진4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음. 또한 한화이메이회사는 OJO회사가 문제된 사진2와 사진3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Getty회사가 OJO회사를 인수한 후 관련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함

- 법원은 최종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면, Getty회사가 문제된 사진의 저작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화이미사가 문제된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는 주장 또한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1심, 2심법원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존재하므로 이를 바로잡으며, 차이루회사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며, 신청인이 제기한 원심 변경의 소송청구를 인용하며 피신청인 한화이미회사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함

🔍 평가

-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자체가 힘든 재심이 최고인민법원에서 결정으로 실시되었고, 나아가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으로 잘못된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이 판결은 중국 저작권 관련 판례 중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임.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자는 중국의 재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당사자의 신청사유가 아래에 열거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재심을 실시해야 한다.

1. 새로운 증거로서, 원판결, 원재정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경우.
2. 원판결, 원재정이 인정한 기본사실에 대한 증거를 통한 증명이 결여된 경우.
3. 원판결, 원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판결, 원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에 대한 질증(质证,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은 경우.
5. 사건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조사와 수집을 신청했지만, 인민법원이 조사수집하지 않은 경우.
6. 원판결, 원재정에서 법률적용에 분명한 착오가 있는 경우.

7. 심판조직의 구성이 합법적이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회피해야 할 심판인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8. 소송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가 본인 혹은 기타 소송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할 경우.
10. 소환장을 통한 소환을 거치지 않고, 결석판결을 내린 경우.
11. 원판결, 원재정이 소송청구를 누락하거나 또는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원재정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문서가 취소 혹은 변경된 경우
13. 심판인원이 사건을 심리할 시 독직수회(贪污受贿), 사정 (私情) 에 이끌린 재판 (私舞弊) , 법을 왜곡하여 재판한 경우 (枉法裁判)

출처

- 자산고(知产库)
- <https://mp.weixin.qq.com/s/1IVhFQcJVpXTsMkrbfz0jA>